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19 선고 2020가합1014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1720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19 선고 2020가합101497 판결

전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금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김윤선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C에게 1,1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가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자 2013. 12. 11. 대출원리금 합계 775,274,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인양지원 2013차5237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2.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D 대 1655.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9.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의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6.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합계 842,731,483원임을 신고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5. 23. 매각대금 535,000,000원, 매각대금 예치이자 74,020원을 합한 배분금액 525,074,020원, 압류 관계되는 국세 금액을 17,282,810원으로 정하고, 원고에게는 69,731,035원, 피고에게는 390,000,000원을 각 배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위 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C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원고가 배분받아야 할 돈 390,000,000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가 피고로부터 월 2%로 정하여 사업자금 및 모(母)의 수술비를 차용한 후 2014. 2. 8.

차용원리금을 3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90,0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와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968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5237호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아 지급명령 정본이 2014. 2. 10. C에게 송달되어 2014. 2.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② C는 피고에게 발행일 2014. 2. 18., 지급기일 2014. 6. 18.로 정하여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2014. 2. 18.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쳤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 10. 2. 춘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각각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제4호증, 을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배당될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는 계좌에서 2005. 9. 30. 20,000,000원, 2006. 12. 27. 10,000,000원, 2007. 3. 29. 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으면서도 C로부터 2014. 2. 19.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때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않았으며, 변제독촉을 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및 2007. 10. 1.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다가 2010. 9. 11. 300,000원을 인출하기 시작하여 2013. 11. 24.까지 인출하였는데, C의 모 G은 2008. 6. 25. 편마비, 뇌혈관질환 등으로 H요양병원에 입원하여 2014. 10. 21.경 사망하였으므로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C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인출한 현금이 C의 모 병원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C는 2019. 11. 15.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년부터는 세금 압류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계좌거래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2012. 5. 30. 금융기관으로부터 250,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피고가 변제자력이 없는 C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은 피고와 C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968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종전의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2013. 8. 21. 2,500,000원 2013. 8. 23. 600,000원, 2013. 11. 24. 5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위 대여일시까지 C로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추가로 대여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5. 9. 30.부터 2013. 8. 21.까지 합계 36,400,000원,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6. 12. 27.부터 2013. 11. 24.까지 합계 32,700,000원 등 69,1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인데, 2014. 2. 18.까지 위 각 인출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금 36,400,000원에 대한 이자는 51,990,505원, 원금 32,700,000원에 대한 이자는 42,848,540원으로 2014. 2. 18. 당시의 차용원리금은 합계 163,939,045원에 불과하여 같은 날 발행된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액면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며,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외에 다른 대여내역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⑥ 원고는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5237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지급명령 정본이 2014. 2. 10. C에게 송달되었는데, C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4. 2. 18.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산된 채무원리금보다 훨씬 많은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E)이 내려진 2014. 2. 20. 바로 전날인 2014. 2. 19.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배분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배분받은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호, 판사 이준범, 판사 김용석